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

2006년 4월 28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이 용 섭
장 관

⊙법률 제79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제1항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이유

다른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추천보조금이 유용되는 경우 이를 재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법 제26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감액(법 제29조제4호 신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벌칙(법 제47조제1항 제4호)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4월 28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

●법률 제7939호

競輪·競艇法 일부개정법률

競輪·競艇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競輪·競艇法”을 “경륜·경정법”으로 한다.